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부착한 자에
대한 형벌 수준 완화 〉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51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부착한 자에 대한 형 벌 수준 완화	2

I. 제안경위

2025년 3월 5일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5년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저공해자동차등에 인증 표지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표지를 붙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차료 감면 등을 목적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이는 경우의 형벌규정이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어 위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하여 과도하고, 장애인사용자 표지부착 위반에 대한 벌칙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인 점과 비교해도 형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이는 경우의 형벌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과도한 형벌규정에 따른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제1호 삭제 및 제94조제1항제1호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부착한 자에 대한 형벌 수준 완화

개정안은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발급되는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인 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제1호 삭제 및 제94조제1항제1호의4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인 자 2. (생략)	제91조의2(벌칙) ----- ----- -----. <u><삭제></u>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3. (생략)	제94조(과태료) ① ----- ----- ----- -----. 1. ~ 1의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u>1의4. · 1의5.</u> (생략) 2. · 3. (생략) ② ~ ⑥ (생략)	<u>1의4.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u> <u>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u> <u>붙인 자</u> <u>1의5. · 1의6.</u> (현행 제1호의4 및 제1호의5와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58조¹⁾에 따르면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공해자동차등의 인증 표지를 붙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지원 시책²⁾을 마련하도록 함.

1) 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⑪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⑫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표지를 발급할 수 있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표지를 저공해자동차등에 붙일 수 있다.

⑬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붙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혼잡통행료(서울시 등록차량에 대하여 별도 조례로 운영), 공영 주차장 주차료 감면(100분의 50 이상) 등 지원 범위를 시·도 조례로 제정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종류, 혜택의 범위는 상이함(환경부).

[저공해자동차 표지 규격]



[저공해자동차의 종류(시행령 제1조의2)]

종류	정 의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제1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가. 전기자동차: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나. 태양광자동차: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다. 수소전기자동차: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제2종 저공해자동차 (제2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제3종 저공해자동차 (제3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현행법 제91조의2³⁾에서는 이러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활용하여 주차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인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법 제9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인 자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부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장애인복지법」⁴⁾의 경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지 부정 사용에 대한 벌금형은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⁵⁾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불인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전환하려는 것으로,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536

4)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5)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 경제 형벌규정 4차 개선과제-, 2042.12.19., 관계부처 합동